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 운영규정

제정 2007.03.30.
개정 2014.06.25.
개정 2017.02.22.
개정 2018.10.3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)의 가맹단체운영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(이하‘관리단체’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8.10.30.>

제2조(관리단체의 지정) 관리단체의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8.10.30.>

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보)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해당 가맹단체에 즉시 통지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7.2.22.>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기타 주요사항

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는 대의원총회, 이사회, 사무국 등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, 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② 관리단체의 임원·선수 및 기타관계자(이하 “관리단체관계자”라 한다)는 가맹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당해 가맹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4.6.25.>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가맹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가

맹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가맹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④ 관리단체 지정 후 1년 이내에 가맹단체로서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5조(관리단체관계자의 의무 등) ① 관리단체관계자는 관리단체로서 장애인체육회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22.>

② 관리단체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및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22.>

③ 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관리단체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. <개정 2017.2.22.>

④ 관리단체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 가맹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조직과 운영 및 권한

제6조(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) ① 위원회는 가맹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4.6.25.>

1.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
2. 각종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3. 법제·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

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
5. 가맹단체 정관(규약)에 규정된 사업 및 가맹단체와 관련된 제반사항 <개정 2014.6.25.>

6. 가맹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6.25.>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
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경기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상벌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4.6.25.>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 <개정 2014.6.25.>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, 부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한다. <신설 2014.6.25.>
2.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<신설 2014.6.25.>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4.6.25.>
4.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 <신설 2014.6.25.>

② 삭 제 <2017.2.22.>

③ 삭 제 <2017.2.22.>

④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7.2.22.>

⑤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또는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.

제9조(보고의무) 위원장은 관리단체 업무의 진행사항을 관리업무 진행 중 개최되는 이사회와 관리업무 종료 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조의무) 위원회는 관리단체 관련 업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22.>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6.25.>

부 칙 <2017.2.22.>

제1조(효력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관리단체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협회규약을 비롯한 각종 규정에 우선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